

## 활어 수송과 계약 체결상의 민사 책임에 관한 연구

박수봉 · 임석원<sup>†</sup>  
(부경대학교)

### A Study about Civil Liability of Live Fish Transportation Contract

Subong PARK · Seok-Won LIM<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ransporting of live fish requires subcontract with an independent contractor. During the transporting of live fish, civil liability problems can be caused by damage of fish. Before transporting of live fish,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and tort liability were arisen, after transporting of live fish, default on an obligation was arisen. To avoid this problems, it is important to put a bond on each other and live fish transporting contract can be made a legal contract. Also, transporting of live fish must be made safe, after transporting, and discharge of obligation, perfect transaction is achieved.

**Key words :** Live fish, Transporting,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Tort liability, Breach of contract

#### 1. 들어가는 말

최근 양식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어류의 활어 상태로의 출하가 가능해지고, 더불어 소비자들의 활어 상태로 접하기 어려운 어종에 대한 질적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활어회의 소비량도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어 수송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활어 수송법은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춘 수조를 장착한 트럭에 의한 수송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송 방법은 경제성만 고려한 방법으로 수송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활어의 품질 저하, 폐사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활어와 같은 수산물은 그 특성상 부패나 변질이 쉽고, 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져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시간적으로 신속성이 우

선적으로 요구된다.

활어와 같은 수산물은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산지에서 수집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업자가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된다. 활어 수송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복잡한 과정과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활어 수송을 위한 계약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계약은 중간 유통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도급 계약에 있어 국제항공화물(Kim Gab-You 1993), 해상운송계약(Kim Jin-Kwon 2007) 등의 법률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된바 있으나 활어 수송과 같은 특수한 도급계약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바가 없다.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896, winterprey@pknu.ac.kr

활어 수송 중에는 어류의 부패나 변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중간 유통업자, 중간 유통업자 사용자 및 대리인 사이에는 민사책임, 면책 및 책임제한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활어 수송을 위한 계약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활어 수송의 개념과 형태에 대한 기초적 논의

### 1. 활어 및 활어 수송의 개념

#### (1) 활어의 개념

활어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과정에 오르는 물고기, 새우, 조개, 물오징어 등의 어패류를 말하며, 수산 생물의 살아있는 상태를 지칭한다(KOFST 2008).

#### (2) 활어 수송

활어 수송이란 수산 생물을 산 상태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활어 수송시에는 물고기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 의한 물의 오염, 산소의 결핍, 온도 상승 등으로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송 전과 수송 중에 수질이나 온도를 제어하고, 산소 또는 공기를 보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춘 수조를 장착한 활어 수송 전용트럭에 의한 육상수송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활어선에 의한 해상수송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활어전용의 철도화차에 의한 수송도 재검토되고 있으며, 수입어는 비행기에 의한 공중수송도 행해지고 있다(KOFST 2008).

### 2. 현재 활어 수송의 형태

#### (1) 육상수송

트럭의 적재함에 수조를 장착하거나 컨테이너를 장착하여 활어 수송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활어 수송 형태이다. 활어의

상·하차가 편리해야 하며, 활어 수송 중에는 물 넘침이 없고, 코너링 등 도로운행의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운행으로 어류의 손상과 폐사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방법이다.

#### (2) 해상수송

해상수송은 크게 어선을 통한 활어 수송과 상선을 통한 활어 수송으로 나누어진다. 어선을 통한 활어 수송은 선박의 갑판위에 대형 수조를 만들어 수송을 실시하며, 상선을 통한 활어 수송은 냉각, 여과, 산소공급 및 비상 생존 장치가 설비된 라이브 컨테이너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이브 컨테이너는 장시간 수송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의 이동 중에 큰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 (3) 공중수송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중수송 역시 상선을 통한 활어 수송과 같이 라이브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실어 운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수송, 해상수송에 비해 수송시 발생하는 비용이 크며, 라이브 컨테이너의 압력 조절 장치 등 추가적인 기술적 요구가 필요한 수송 방법이다.

### 3. 도급계약과 당사자 확정

활어 수송 계약은 중간 유통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활어 수송을 위한 계약성립을 위한 합의과정부터 시작해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과 이에 따른 이행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당사자간에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하게 된다(Jung Hae-Sang 2008).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과 활어 수송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Bang Kyong-Sik 2011). 또한 도급인인 활어 수송의 의뢰인은 안전하게 활어 수송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계약자를 선정하여야하며, 계약자가 적정하게 활어 수송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계약의 완성을 약정하는 측의 당사자이며,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활어를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민법 제 667조에는 수급인은 채무의 본지에 따라 계약을 완성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담보책임, 즉, 하자보수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도급인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계약의 완성을 위임하는 측의 당사자이며,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활어를 인도할 의무를 맡긴다. 민법 제 664조에 의해 도급인의 이러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Ⅲ. 활어 수송전의 민사책임

#### 1.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접촉개시시부터 계약성립을 위한 계약체결시까지의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의 당사자의 과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상에 일방의 과실로 타방이 손해를 입게 되면, 과실 있는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이라 한다(Kwak Yun-Jik 1991).

(1)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요건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은 적어도 수송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 내지 교섭이 시작된 경우에 문

제된다.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거래적 접촉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성립 전에 고의 또는 과실의 당사자가 행위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Song Tuck-Soo 2009).

1) 계약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과실약정책임과 사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성립의 확신을 형성해가는 단계이다.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등 계약성립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단계이다(Jung Hea-Sang 2008).

활어 수송 계약을 맺으려면 당사자는 우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과 절충 내지는 상담을 하게 되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활어 수송 계약은 성립한다. 이러한 준비단계에서 상담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상담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을 발생한다. 활어 수송 계약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활어 수송을 시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을 인정된다(Lee Yoon-Seon 2004).

2)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과실약정책임

활어 수송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활어 수송 중 어류의 부패, 폐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활어 수송방법을 잘못 알린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고지 또는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과실약정 책임

활어 수송 계약교섭행위가 종료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의 유효한 성립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 법규에 위반된 계약의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우,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Lee Yoon-Seon 2004).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수급인이 활어 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 당사자와의 수송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이다. 또한, 활어 수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송이 시작되기 전 수송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수송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원시적 불능이 된다. 이 경우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활어 수송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Kim Sang-Yong 2003).

(2)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의 효과

1)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의 범위

계약의 성립을 신뢰한 경우에 손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계약 목적에 고유한 관련성을 가진 직접적 손해에 한정된다(Kwak Yun-Jik 1995).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다고 믿었다는 것은 계약 교섭과정에서 계약성립의 사행성을 넘어서 성숙된 당사자관계의 신뢰수준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방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을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는 것이다(Jung Hea-Sang 2008). 따라서 활어

수송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서의 과실약정책임의 효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은 계약의 목적에 고유한 관련성을 가진 손해를 책임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Kwak Yun-Jik 1995).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서 활어 수송을 위해 선착장까지 이동시 발생하는 비용, 대금지급을 위하여 용자를 받은 이자, 제3자로부터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인한 손해 등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얻고자 한 이익에 대한 책임범위인 것이다(Jung Hea-Sang 2008).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Park Hee-Ho 2005).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은 신뢰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계약이 유효하여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Yang Chang-Soo 1995). 하지만 계약의 목적에 고유한 관련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손해로서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Jung Hea-Sang 2008).

2. 계약체결상의 법정책임

(1) 법정책임의 요건

계약체결상의 법정책임이란 계약체결상 과실약정책임이 계약체결시에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에 기인한 것이다(Kim Jun-Ho 2004). 계약체결의 준비 등의 과정에서 일반적 보호의무의 위반이 존재하고 위법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논의 할 수 있다(Jung Hea-Sang 2008).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로서 이에 위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Gwak Min-Hui 2011). 예를 들어, 활어 수송 계약을 체결하러 온 당사자 중 일방이 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대화도중 점포 바닥의 물이나 기타 약품을 밟고 미끄러져 목이나 허리를 다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점포측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법정 책임이 발생한다.

## (2) 법정책임의 효과

### 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 750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Oh Byeong-Cheol 2014). 활어수송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록 활어소송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기 전이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내용 및 불이행과는 관계없이 점포의 주인은 계약체결을 하려는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온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 2) 손해배상의 방법

불법행위책임의 효과로는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배상주의에 의한 방법이 원칙이다(Oh Byeong-Cheol 2014).

## IV. 활어 수송후의 민사책임

### 1.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형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

았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뉜다.

#### (1)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의 이행기가 되어야 한다. 민법 제 387조 제 1항 제 1문에 의하면 채무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활어 수송이 완료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수송비용의 지불이 이루어져야하나 수송비용 지불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어 수송 계약의 경우는 민법 제 536조와 같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활어 수송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간이 되었지만 활어 수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이행불능

수급인의 활어 수송 차량이 가압류를 비롯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더 이상의 활어 수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송된 활어의 소유권이 제 3자의 압류로 인해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 즉,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된다(Seo Bong-Suk 2006).

#### (3)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불완전이행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대해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생긴 경우이다(Song Tuck-Soo 2013).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으로서 무엇인가 급부가 행해져야하며, 이행이 불완전하여야한다. 활어 수

송 도중 활어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에 다른 싱싱한 활어까지 품질을 상하게 한 경우가 불완전이행의 예이다.

## 2.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입는 손해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적정한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중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Yang Sam-Seung 1988). 예를 들어 활어 수송 계약과 같은 도급계약에서의 채무는 활어를 안전하게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활어가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활어 수송 후 활어의 품질이 그 권리가 된다. 활어를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의 주체와 어떠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활어 수송 중 일부 어류의 품질이 저하되었을 경우,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한 뒤 손해배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활어 수송 중 발생한 손해는 모두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민법 제 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 (2) 계약해제

민법 제 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활어 수송 계약에 있어서는 활어의 원상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으로 나타난다. 계약해제로 인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활어 수송비용의 지급은 소멸되고, 이미 지급한 수송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다.

## V. 맺음말

양식 기술의 발전은 수산물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적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최근 전국 각지로 활어 수송을 통한 활어회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

활어 수송은 수산물 생산자, 중간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활어 수송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송전, 후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활어 수송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성립을 위한 합의과정부터 시작해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과 이에 따른 이행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당사자간에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약정책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신뢰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민사법상의 책임의 정도를 따져야 된다.

활어 수송은 일반적인 수송계약과는 달리 살아 있는 활어를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특수한 측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활어 수송을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

법한 활어 수송 계약이 우선되어야하며, 활어 수송 시에는 활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송이 이루어지고, 활어 수송 후에는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불이행되었을 시에는 민법에 의하여 다른 수송계약보다 더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 References

- Bang, Kyong-Sik(2011). Real terms dictionary, Buyonsa.
- Gwak, Min-Hui(2011). Economic loss in torts, Ewha law journal, Vol 16(1), 225~264.
- Jung, Hae-Sang(2008). The Theories on the Liability of Culpa in Contrahendo,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2(1), 123~139.
- Kim, Gab-You(1993).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Legal Analysi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Vol 2(1), 45~85.
- Kim, Jin-Kwon(2007). A Study on the Rights of Independent Contractors under Contract of Carriage by Sea - focusing on Himalaya Clause, Research of maritime law, Vol 19(2), 233~255.
- Kim, Jun-Ho(2004) Civil law precedent, Bobmunsa
- Kim, Sang-Yong(2003). Comparative Research on Precontractual Liability, 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 52(4), 5~42.
-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2008). Food science and Technology Dictionary, Kwangilsa.
- Kwak, Yun-Jik(1991). Bond Specific Theory, Pakyoungsa, 71.
- Kwak, Yun-Jik(1995). Bond Specific Theory, Pakyoungsa, 92~93.
- Lee, Yoon-seon(2004). Culpa in contrahendo,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11, 210~240.
- Oh, Byeong-Cheol(2014). The law of court bond, Bobmunsa, 70~76.
- Pak, Hee-Ho(2005). Verschulden bei Vertragsschluß und Rechtswidrigkeit, HUFs law review, Vol 18, 249~279.
- Seo, Bong-Suk(2006). Eine stukturelle Betrachtung des allgemeinen Schuldverhältnisses und des vertralichen schuldverhltnisses, The Journal of Law, Vol 3(1), 201~225.
- Song, Tuck-Soo(2009). New civil law lecture, Pakyoungsa, 1139.
- Song, Tuck-Soo(2013). Bond law general theory, Pakyoungsa, 149.
- Yang, Sam-Seung(1988). Grundlegende retrachtung uber den umfang des schadensersatzes in Koreanischen BGB,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Yang, Chang-Soo(1995). Civil law study, Pakyoungsa, 162.

- 
- 논문접수일 : 2014년 05월 3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6월 16일  
2차 - 2014년 07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30일